

員.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以上으로 審査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孟今龍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5件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地方公社等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都市開發事業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각각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長님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以上 5件이 各各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120인이내”를 “150인이내”로 동조제2항중 “위촉한다”를 “위촉한 자로 한다”로, 동조제3항중 “위원장이 지명한”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건설공사의 타당성”을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으로, 동조제3호중 “시장,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기타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30인이내”를 “15인이내로”로, 동조제4항중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명한다”를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임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항중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를 “관계공무원을 회의에”로 한다.

⑤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로, “제3조제1항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기본설계를 완료할 때. 다만,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때
2.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시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공사의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제7조제1항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9조제4항중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의 해외여행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p>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p> <p>4.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설시설계심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이미 기본설계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심의를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p> <p>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를 삭제한다.</p> <p>제5조중 “본부와 하부기관에”를 “본부에”로 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재사업소장이 행한 행정처분·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건설자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종합건설본부장의 행위 또는 종합건설본부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③(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건설자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를, 건설자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p> <p>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본부장 밑에 청소연구소 및 난지도관리사업소를 둔다.</p> <p>제4조제2항중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위생처리사업소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하며,”를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며,”로 한다.</p> <p>(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처리사업소장이 행한 행정처분·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위생처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청소사업본부장의 행위 또는 청소사업본부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③(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위생처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사업본부를, 위생처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사업본부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다음 페이지에 계속)</p>
--	---